의안번호	2214683
의 뢰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9.
추계번호	25A6562
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호(정의)	1. “통상조약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가.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.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	의무규정
2	안 제8조 (판로확보 지원)	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1.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·판매 지원 2.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.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.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.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호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 (판로확보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①통상조약의 정의에 '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·통상 관련 조치'를 추가하고(안 제2조제1호나목), ②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 확보·홍보,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8조)하는 내용임

❑ (안 제2조제1호나목) 통상조약의 정의에 '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·통상 관련 조치'를 추가하는 경우,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
○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, 관련 기관[1]과 합동으로 FTA·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,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(본사 1곳, 지부 34곳)를 운영하고 있음

※ [참고자료]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재정사업

❑ (안 제8조)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 확보·홍보,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
○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6조[2]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

---

1) FTA·통상 종합지원센터 합동 운영 기관: 산업통상부, 재정경제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중소벤처기업부, 관세청, 한국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산업단지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KTNET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지식재산보호원, aT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

2) 제6조(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)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(이하 "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기업이 실질적 영향(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, 고용인원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)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

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5%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제조업·서비스업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·심의를 통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함

○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술·경영 혁신지원(컨설팅), 통상변화대응자금(시설·운전자금) 융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

–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연간 신청을 받아 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사업 실시

[표 2]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사업 현황

세부사업 (내역사업)	지원사업	내용	2026년 예산(회계)
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(내내역사업: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)	기술·경영 혁신지원	○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3억 7,600만원(일반회계)
재도약지원자금(융자) (사업전환자금)	융자지원	○ 업체당 60억원 한도, 고정금리 2%(운전자금 5억 한도, 지방소재기업은 70억 한도)	3,125억원* (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) * 사업전환자금 총 예산

자료: 산업통상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)

○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지원 방식,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2.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<후 략>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재정사업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(코드)	내용	2025년 예산	2026년 예산
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(1935-301)	기발효 FTA의 성과 극대화 및 신규타결 FTA 확대에 따른 활용지원 정책의 보완·시행을 통한 FTA 활용률 제고 - (중소기업 FTA활용지원) 중소·영세기업을 대상으로 FTA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·상담·설명회 등 지원 - (FTA 전문인력양성) FTA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・일반국민(기업재직자 등)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무교육 지원 - (통상협정 국내대책이행) FTA 이행상황 평가·성과분석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지원 및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 대상 기술·경영 혁신 지원	11,293	11,719
통상분쟁대응 (1936-401)	통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 이익 보호 - (통상분쟁 및 잠재분쟁 대응) WTO규범 위반 조치에 대한 정부간 WTO 제소·피소 등 분쟁해결절차 회부 및 대응을 통해 수출 지원 등 통상 이익 보호하고, 타국 간 당사자 분쟁에 제3자 참여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- (WTO 모의재판) 통상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 기반 마련 - (수입규제 대응강화)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(반덤핑, 세이프가드, 상계관세)에 대한 민·관 합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상이익 보호 - (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) 통상법 포럼의 정기 개최(분기별)를 통해 통상법 현안 및 전문가 의견 공유 - (통상정책 홍보 및 대응)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간 통상 이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및 정보·교육 제공 등 - (다자통상 협상추진) WTO, APEC, G20, OECD, ASEM 등 다자통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상 규범 수립 시 우리 이해관계 반영 및 보호주의 대응 강화 - (WTO협력강화) 우리나라 인재의 WTO 등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인력 파견 시 소요되는 체재비 등 비용 지원	18,031	15,432

자료: 산업통상부